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른 수업 운영 방식 변경 기준안 및 2020-2학기 수업 운영 방식 변경 안내

코로나19 사태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 정도는 코로나 사태가 완전 종식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변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코로나19 사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아래와 같이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른 수업 운영 방식 변경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안내해 드립니다.

※ 2020년 8월 25일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아래 수업 방식 변경 기준안에 따라 **2020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 방식**을 기 공지한 ‘**유형 I: 대면/순차대면 혼합**’에서 ‘**유형 II: 대면/비대면 혼합**’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수업 방식 변경 기준안

- 울산 및 타 지역(1군데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수업 방식 변경 기준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수업 방식
울산	타 지역	
1	1, 2	유형 I: 대면/순차대면 혼합
2	1, 2	유형 II: 대면/비대면 혼합
1	3	
2	3	유형 III: 전면 비대면
3	1, 2, 3	

① 유형 I: 대면/순차대면 혼합

- 강좌 유형별 수업 방식

강좌 유형	수업 방식	
이론 중심	수강 인원이 강의실 수용 인원의 50% 이하	대면 수업
	수강 인원이 강의실 수용 인원의 50% 초과	순차 대면 수업
실험/실습/실기 (이론 및 실험/실습/실기 포함)	대면 수업	

- ‘순차 대면 수업’이란 온-오프라인 혼합 수업 방식으로, 수강 인원이 강의실 수용 인원의 50%를 초과할 경우 수강 인원을 2개 조로 나누어 1조는 대면 수업, 2조는 비대면 원격 수업(수업 종료 후 강의실 강의 녹화 영상 온라인 탑재 등)으로, 요일 또는 주차별로 수업을 나누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 이론 중심 수업의 상기 수업방식은 수강 정정 등으로 인해 수강 인원이 변동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험/실습/실기(이론 및 실험/실습/실기 포함) 교과목에 있어서 수강 인원이 강의실 수용 인원의 50%를 초과할 경우 강의실 변경, 분반 또는 분산하여 운영합니다.

② 유형 II: 대면/비대면 혼합

- 강좌 유형별 수업 방식

강좌 유형	수업 방식
이론 중심	비대면 수업
실험/실습/실기 (이론 및 실험/실습/실기 포함) 대학원 교과목	대면 수업

- 비대면 수업에 있어서 강의 영상은 최소 25분(1학점 50분짜리 강의 기준)이상 제공되며 부족 시간분은 리포트, 퀴즈 등으로 대체합니다.
- 실험/실습/실기(이론 및 실험/실습/실기 포함) 교과목과 대학원 교과목에 있어서 수강 인원이 강의실 수용 인원의 50%를 초과할 경우 강의실 변경, 분반 또는 분산하여 운영합니다.

③ 유형III: 전면 비대면

- 강좌 유형별 수업 방식

강좌 유형	수업 방식
이론 중심	비대면 수업
실험/실습/실기 (이론 및 실험/실습/실기 포함)	

- 비대면 수업에 있어서 강의 영상은 최소 25분(1학점 50분짜리 강의 기준)이상 제공되며 부족 시간분은 리포트, 퀴즈 등으로 대체합니다.
- 교육효과 제고(예, 일대일 실기 수업)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경우 승인된 교과목에 한하여 대면수업이

가능합니다.

2. 기타 유의 사항 등

- 비대면 수업에 있어서 과제물 활용 수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수업 방식이 유형 III -> 유형 II -> 유형 I로 변경될 경우 적정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수업 방식이 유형 I -> 유형 II -> 유형 III로 변경되는 경우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공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실내 강의실 당 최대 수강인원은 울산광역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일 때는 49명(실외 강의의 경우 99명), 3단계일 때는 9명(실외 강의 포함)으로 제한합니다.
- 상기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수업 방식 변경 기준안은 큰 틀에 서의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수업 방식은 동일한 단계내에서의 심각성의 정도, 대학 및 주변 상황 등에 따라 상기의 기준안과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